

제 호

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자의 비축을 명합니다.

업체명	대표자 성명
본사 소재지	본사 전화번호
공장 소재지	공장 전화번호

품 목	규 격	단 위	수 량	비축장소	비축기간

년 월 일

기 관 장 명 의

